

1. 개정이유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18호, 2022. 2. 3. 공포, 2022. 2. 2. 시행)됨에 따라, 개정 법률안의 신설·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

- 1)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, 제18조,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, 제14호, 제18호, 제19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00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폐지 등, 없음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4항,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”을 “법 제5조제5항,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5항”을 “법 제5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조제6항”을 각각 “법 제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8항”을 “법 제5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제11조”를 “법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제3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6항”을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”
를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별지 제19호서식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2조제
3항”을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2조제1항부터 제3
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) ① <u>법 제5조제4항,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</u>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, 액화석유가스 판매, 가스용품 제조,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제12조(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) ① <u>법 제5조제5항,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3조(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) ① <u>법 제5조제5항</u>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략)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<u>법 제5조제6항</u> 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	제13조(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) ① <u>법 제5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법 제5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④ ~ ⑧ (생략)

제14조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)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사업개시 등의 신고)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

-----.

-----.

③ ----- 법 제5조제7항-----

-----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) ① 법 제5조제9항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업개시 등의 신고) 법 제11조제1항-----

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·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·중단·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·중단·폐지·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19조(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) ① <u>법 제12조제3항</u>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9조(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) ① <u>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[] 허가
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

[] 변경허가

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허가: 5일 변경허가: 4일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	사업소 소재지		
영업소	상호		
	소재지		
	용기저장소 면적	m ²	저장능력

※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변경 내용	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	사업소 이전		
	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		
	소		
	저장설비의 위치변경		
	저장설비의 수량증가		
변경 사유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[]허가 []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허가 시 1. 사업계획서 1부 2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	수수료
	변경허가 시 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	• 허가: 1만5천원 • 변경허가: 1만5천원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천원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 (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제 호
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

1. 영업소 상호:

2. 영업소 주소:

3. 저장설비 면적: m²

4. 저장능력: kg

5. 충전사업자 상호: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18호서식]

[] 개시
[] 중단
사업, 저장소 사용 [] 폐지 신고서
[] 재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※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(영업소 포함), 집단공급사업,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신고인	상호:	
	대표자:	생년월일: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	사업소 소재지:	

신청 세부 내용	허가사항	허가나 등록의 종류:	
		허가나 등록 번호:	허가나 등록 연월일:
	개시 · 중단 · 폐지		
	· 재개 연월일		
	사 유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

[] 개시 · [] 중단 · [] 폐지 · []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일
신고인	상호:		
	대표자: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):	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	
신고 세부 내용	사업의 종류:		
	허가나 등록 번호:	허가나 등록 연월일:	
	사업소 소재지:		
	지위승계 내용	[] 상속 [] 양수 [] 합병 [] 그 밖의 것	
	상호의 변경	(변경 전)	(변경 후)
	※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		
지위승계 연월일:	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. 계약서 사본, 상속·경매·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)	

처 리 질 차

